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2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정준호·이기헌·박홍배

복기왕 • 문진석 • 윤종군

이연희 • 박용갑 • 안태준

이학영 · 임호선 · 염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속버스는 KTX,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, 특히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%를 차지하는 우등·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 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철도 등에 비해 차별을 받 고 있으며,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받는 택시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노선 감소와 버스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, 이로 인해 노선이 더 감소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. 이에 우등·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,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(제26조제1항제7호가목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중 "항공기, 고속버스"를 "항공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	
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	대한 면세) ①		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			
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여객운송 용역. 다만, 다음	7		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		
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			
외한다.			
가. <u>항공기, 고속버스</u> , 전세버	가. <u>항공기</u> ,		
스, 택시, 특수자동차, 특			
종선박(特種船舶) 또는 고			
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			
용역			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		
8. ~ 20. (생 략)	8. ~ 20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